

行政調查의 法理論과 法制小考

申相煥*

차례

- I. 총 설
- II. 행정조사의 개념
- III. 행정조사와 행정상의 즉시강제의 구별
- IV. 행정조사와 정보공개·보호
 - 1. 정보공개의 문제
 - 2. 정보보호의 문제
- V. 행정조사의 종류
 - 1. 권력적 행정조사와 비권력적 행정조사
 - 2. 직접조사와 간접조사
 - 3. 대인적 조사·대물적 조사·대가택 조사
 - 4. 경찰상 조사·경제행정상 조사·교육행정상 조사 등
 - 5. 기타 분류방법
- VI. 행정조사와 법률의 유보
 - 1.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 2. 행정조사의 한계
- VII. 행정조사의 하자문제
- VIII.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 1. 적법조사에 대한 구제
 - 2. 위법조사에 대한 구제

* 法制處 法制官

I. 총 설

전통적인 행정법학에서는 행정조사를 독립적인 연구대상으로 하지 않고 다만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 내용으로 다루어 왔으나 최근에는 행정조사를 독립적인 문제로서 다루는 경향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대개 행정조사의 문제를 행정벌·행정강제, 행정상 제재와 의무이행의 강제 또는 행정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등의 내용과 같은 제목하에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에는 현행 법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문이 일어난다. 행정조사가 행정상 즉시강제와 동일한 시각에서 출발하여 그로부터 분리·고찰되게 되었으나 행정조사는 행정강제·행정벌 내지 행정법상 의무수행확보수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조사는 때로는 행정상 입법이나 행정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수집의 수단으로, 때로는 명령적 행위나 형성적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행하기 위한 확인수단으로, 행정지도나 행정계약을 위한 사전확인차원등 행정법의 모든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행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넓은 의미에서 행정의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또는 각법상의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한 광범위하고 기초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조사는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이나 행정목적의 실현수단이라는 제목하에 다루는 것이 현행법과 관련하여 보다 적절하고 논리적인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따라서 행정조사를 행정의 행위형식의 한 종류로 독립적으로 다루는 것이 보다 의미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다만 이 경우에는 통일적인 법리를 구성하는데 일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법이론에서의 새로운 경향도 기본적으로는 행정조사를 ①행정상 즉시강제로부터 분리하여 권력적 조사작용만을 개념화하는 입장¹⁾ ②권력·비권력조사작용을 불문하고 일체의 조사작용을 개념화하는 입장²⁾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법의 입법경향 및 행정현실상 행정조사가 작용하는 면을 중시하여 일체의 조사작용을 행정조사의 문제로 파악하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1) 박윤훈, 『행정법강의(상)』, 박영사, 1997년, 572면;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1995년, 삼영사, 536면; 이상규, 『신행정법론(상)』, 1982년, 558면.

2)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1995년, 470면; 유지태, 『행정법신론』, 1995년, 275면.

있는 입법경향을 검토하여 향후 입법방향수립에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II. 행정조사의 개념

행정조사란 적정하고도 효과적인 행정을 위하여 입법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개인이나 단체 등에 관한 자료·정보를 수집하는 사실행위로서의 조사작용을 말한다.³⁾

1. 주체 : 행정조사의 주체는 행정기관이다.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사작용을 말한다.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등의 입법기관에 의한 입법조사나, 사법기관에 의한 증인신문·증거조사 등의 사법조사는 여기서 말하는 행정조사가 아니다. 그것은 입법조사·사법조사일 뿐이다.

2. 효과 : 행정조사의 효과는 사실적이다. 행정조사는 통상 그 자체가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는 아니다. 그것은 사실행위일 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수인의무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행정조사가 사실행위 이기는 하나 그 자체가 독립적인 의미를 갖는다기보다 다른 법적 작용을 위한 준비작용(영업정지나 허가취소등의 행정처분을 위한 위법사실의 확인이나 위법증거의 확보 등)으로서의 성질을 많이 갖는다고 할 수 있다.

3. 성질 : 행정조사의 성질은 복합적이다. 행정조사는 반드시 권력적 조사작용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비권력적 조사도 행정조사에 포함된다. 물론 권력적 조사의 경우에 보다 많은 법적 문제가 놓인다. 이에 대하여는 행정조사의 개념중에 권력적 조사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조사작용도 포함시킨다면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그 성격이 다양하여지므로 통일적 법리의 구성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비판적인 견해가 있다.⁴⁾

III. 행정조사와 행정상의 즉시강제의 구별⁵⁾

전통적인 행정법이론에서는 행정조사는 권력적 작용임을 그 요소로 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구체적 의무를 부여하여 그 불수행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3) 석종현, 전게서, 519면.

4) 석종현, 전게서, 519면.

5) 이 부분은 대체로 이상규, 전게서 412면에 설명된 사항을 기술한 것임.

적으로 수행되는 강제적 작용이라는 점에서 행정상의 즉시강제와 동일한 개념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행정조사와 행정상의 즉시강제와는 엄밀히 볼 때, 그 목적, 내용 및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다. 즉, ㉠행정상의 즉시강제는 직접 개인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상 필요한 구체적·직접적·중국적인 결과를 실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 대하여, 행정조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행정작용을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하는 준비적·보조적 수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행정상의 즉시강제는 직접적인 실행행사를 통하여 스스로 일정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것인 데 대하여, 행정조사는 현행법상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정한 영장에 의하는 경우 외에는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실행행사가 아니라 행정벌, 행정질서벌 또는 허가취소 등의 불이익처분에 의한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행정조사를 수인시키는 것이고, ㉢행정상의 즉시강제는 권력적인 집행작용인데 대하여, 행정조사는 권력·비권력적인 조사작용이라는 점에서 서로 구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조사는 설혹 행정상의 즉시강제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즉시강제의 전제적 내지 부수적 수단으로 작용하는 데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행정상의 즉시강제는 행정조사와 동일시점에서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마치 접수와 수리가 서로 시점상으로 보아 중첩된 경우와 같이 서로 별개의 행위이며, 행정조사의 결과 확인된 사실에 입각하여 행하여지는 데 불과하다. 총포화약류로 인한 공안예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가영치 등 즉시강제가 관계공무원의 임검 등의 행정조사를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며(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3조), 사격장 및 사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사격중지 등 즉시강제가 관계공무원의 사격장임검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 등은 그의 예라 하겠다.

IV. 행정조사와 정보공개·보호⁶⁾

오늘날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이를 통해 개인이나 기업의 정보수집수단으로서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고 있다.

6) 유지태, 전게서, 280면 내지 284면.

1. 정보공개에의 문제

(1) 정보공개에의 의의

오늘날 정보는 그 양이 증대하면서 이를 처리하는 기술을 가진 주체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 갖는 정보는 기술적인 한계와 시간적인 한계, 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제약이 따르지 않을 수 없으며, 이 때문에 적지 않은 영역에서 다른 주체에 의한 정보제공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때에 나타나는 주체로서는 대표적으로 행정기관을 들 수 있다. 행정기관에는 정보를 축적하는 기술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공권력 등으로 인해 엄청난 양의 정보가 수집, 축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행정기관의 정보, 즉 특히 행정조사를 통한 행정정보는 원칙적으로는 공개되어야 한다. 이는 규범적으로 헌법상의 권리인 국민의 알 권리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이를 통해 정보의 유통과정에서 국민을 그 주권자적 지위에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개별적인 경우에 있어서 행정절차과정에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공개될 필요가 있고, 행정소송에서 자신의 권익을 적절하게 방어하기 위하여서도 공개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국가기관의 행위에 대한 최후의 감시자로서의 국민의 기능을 위해서도 행정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즉 시민이 잘못된 행정작용이 행해지지 않도록 감시와 통제를 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를 통해 행정작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행정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2) 정보공개에의 법적 체계

이러한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규율은 그러나 행정기관의 자율적인 해결에 일임되어서는 안되며, 일정한 원칙을 마련한 법적인 규율하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우리의 경우에는 그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적 규율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행정규칙인 훈령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는 1992년 6월 23일의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그 효력이 확정된 청주시 정보공개조례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행정정보공개법 제정작업이 진

행중에 있는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정보공개기반구축과 운영기준에 관한 국무총리훈령이 1994년 3월 2일에 제정되고 시행된 바 있다. 이에 따라 1994년 7월 1일부터는 각종 행정정보 및 자료에 관한 일반공개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1996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을 그 취지로 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공개대상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하고 있다(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그리고 정보공개대상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며(동법 제2조제3항),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보나 외교관계등 국익관련 정보와 국민의 생명과 신체보호등 공익관련 정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3조 및 제7조).

또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며(동법 제9조), 공개대상정보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일시 및 장소에서 준비하되 공개정보와 비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분리될 수 있는 때에는 부분공개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법 제11조 및 제12조).

정보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도록 하고, 정보비공개결정의 통지를 받은 청구인은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동법 제15조 내지 제17조).

2. 정보보호의 문제

(1) 정보보호의 의의

정보는 이러한 공개의 필요성 못지 않게 보호의 요청 또한 강하게 나타나는 특색을 가진다. 즉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국가기밀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합리적인 선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물론 이때의 국가기밀에 따른 정보보호는 국가 전체의 이익차원에서 배려되는 것이므로 정권유지차원이나 특정인의 탄압차원에서 남용되어서는 안됨은 물론이다. 그 밖에도 행정기관의 정보중에서 범죄의 예방이나 수사에 관한 정보등도 관련되는 행정작용의 실효성을 위해 보호되어야 할 것이며, 기업의 비밀도 일정한 경우에는 영업상의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보보호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개인에 관한 정보의 보호이다. 개인의 정보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사생활보호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이때의 정보보호의 의미는 일정한 개인정보의 비공개뿐 아니라 이에 못지 않게 내부적인 정보의 관리도 중요시되어야 한다. 즉 우선 개인에 관한 정보중에서 정치적 신조나 종교, 사상, 노조나 정당에의 가입여부 등에 관한 정보는 입력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사례로는 과거 정권에서 정권유지차원에서 이러한 내용의 개인의 정보가 수집되고 관리되어 온 예를 들 수 있다.

또한 개인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어 신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경찰컴퓨터에서 잘못 기록되거나 이미 삭제되어야 할 개인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우리는 아직도 종종 언론을 통하여 보고 있다. 그 밖에도 수집된 개인정보가 수집목적에 위반하여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잘못 기록된 개인정보에 대해 정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공되어야 한다.

(2) 정보보호의 법적 체계

이러한 정보보호에 대한 대책도 행정적인 감시체제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법적인 차원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현행법으로서에는 이에 관해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가 전산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의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그 규율에 있어서 사생활보호가 주된 규율목적이 아닌 점에서 한계가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이보다는 개인의 정보보호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입법체계가 필요하게 된다. 이에 관한 법률은 최근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제정되었는데, 1994년 1월 7일 제정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그것이다. 이는 국가주요업무에 대한 전산화대추진과 전국적 행정전산망의 구축등으로 개인정보의 부당사용 또는 무단유출로 인한 개인사생활의 침해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컴퓨터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입법취지로 하고 있다.

동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하되, 공공기관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고(동법 제2조제1항),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총무처장관에게 기타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도록 하였다(동법 제6조제1항).

통보를 받은 총무처장관은 개인정보화일에 관한 사항을 연 1회이상 관보에 게재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화일별로 개인정보화일대장을 작성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동법 제7조 및 제8조),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화일을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되,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통계작성이나 학예연구 등 특정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등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법 제10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화일에 기재된 범위안에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당해 처리정보의 내용중 정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동법 제14조), 민간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컴퓨터를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예에 준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의 보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동법 제22조),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동법 제23조). 또한 이와 관련된 법적 규율로는 1993년에 발령된 금융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대통령의긴급재정경제명령을 들 수 있다. 이 명령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정보의 제공 및 누설을 금하고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해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의 정보가 보호되는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V. 행정조사의 종류

일반적으로 권력적 행정조사와 비권력적 행정조사, 직접조사와 간접조사, 대인적 조사·대물적 조사 및 대가택 조사, 경찰상 조사·경제행정상 조사 및 교육행정상 조사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1. 권력적 행정조사와 비권력적 행정조사

이것은 행정조사의 성질에 따른 구분으로서 강제조사와 임의적 조사라고도 한다.⁷⁾ 권력적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명령·강제를 수단으로 하는 행정조사(불심검문, 물건의 수거, 가택수색 등)를 말하고, 비권력적 행정조사는 명령이나 강제를 수반하지 않는 행정조사(정책수립목적의 통계조사, 임의적인 공청회 등)를 말한다. 권력적 행정조사는 기본권보장과 관련하여 그 법적 근거와 한계가 특히 문제된다.

2. 직접조사와 간접조사

이것은 행정조사의 방법에 따른 구분이다. 직접조사는 사람의 신체·재산·가택에 직접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는 행정조사(수색등)를 말하고, 간접조사는 사람의 신체·재산·가택에 직접 실력을 가함이 없이 행정상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는 행정조사(여론조사)를 말한다. 조사의 효과에 있어서는 직접조사가 보다 적합하나, 기본권침해가능성의 배제라는 점에서는 간접조사가 더 적합하다.

7) 유지태, 전게서, 276면.

3. 대인적 조사 · 대물적 조사 · 대가택 조사

이것은 행정조사의 대상에 따른 구분이다. 대인적 조사의 예로 신체의 수색 · 불심검문 및 질문(관세법 제216조 및 제221조 내지 제225조, 어법자원보호법 제4조등)을, 대물적 조사의 예로 물건의 수거 · 검사(대마관리법 제13조, 식물방역법 제4조, 약사법 제64조, 원자력법 제103조등)를, 대가택조사의 예로 가택출입 · 임검(소방법 제5조등)을 들 수 있다.

4. 경찰상 조사 · 경제행정상 조사 · 교육행정상 조사 등

이것은 행정조사가 이루어지는 행정영역에 따른 구분이다. 경찰상 목적의 조사의 예로 불심검문, 경제행정상 조사의 예로 국세조사, 교육행정상 조사의 예로 취학예정아동의 조사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예를 든 영역외의 행정영역에서도 행정조사가 이루어짐은 물론이다.

5. 기타 분류방법

현행 법규정을 내용별로 검토하여 보면, 행정심판위원회, 해난심판위원회 등 독립된 심리 · 의결기관의 심판관, 조사관이나 심사관등이 행하는 조사(국세기본법 제76조, 해난심판법 제37조등)와 관계공무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영업자 등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조사 등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VI. 행정조사와 법률의 유보

1.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1)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와 관련한 법이론

1) 권력적 행정조사의 경우

권력적 행정조사는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제한과 침해로 가져오는 것인 바, 그것이 아무리 필요하다고 하여도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침해유보). 현재 이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단지 개별법에서 규정되고 있을 뿐이다(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에 관한 제2조, 총포 · 도검 · 화약류등단속법상의 임검에 관한 제43조등). 향후 권력적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한다면 그러한 입

법은 행정조사의 목적·범위·방법, 조사자료의 관리·이용·폐기 등에 관해 규율해야 할 것이다.

2) 비권력적 행정조사의 경우

비권력적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것이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법적 근거를 반드시 요하지는 아니한다. 행정작용의 근거규정은 비권력적 행정조사의 권능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행정기관의 비권력적 조사는 조직법상 권한의 근거는 있어야 하고 그 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학설상 주장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현행 법제의 체계적 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와 관련한 법제적 검토⁸⁾

관계공무원의 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벌금이나 징역등의 행정형벌 또는 행정질서벌이 뒤따르지 아니하는 비권력적 행정조사에 대하여 법률에서 규정한 것으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67조, 공유수면관리법 제16조, 국세기본법 제76조, 국세징수법 제27조, 남녀고용평등법 제20조, 대마관리법 제13조, 부당이득세법 제6조, 부동산중개법 제37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상품권법 제29조, 선원법 제116조, 식물방역법 제4조, 약사법 제64조, 원자력법 제103조, 의료보험법 제76조, 의료보험법 제23조, 인장업법 제7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0조, 전력기술관리법 제23조, 주세법 제43조, 증권거래세법 제17조, 지방세법 제74조, 직업안정법 제41조, 출입국관리법 제82조, 통계법 제12조, 특별소비세법 제26조, 항공법 제152조의3 및 제153조, 해난심판법 제37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4조 등이 있다.

이는 법제적으로 각 법률에서 행정조사규정을 제정시에 권력적 조사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를 빠짐없이 규정하고 있으나, 비권력적 조사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이 없이 입법한 결과로 생각되므로 체계적인 법제기준이 보완되어야 할 것인 바, 법제처에서 제정한 법령입안심사기준에 의하면 “출입검사 및 질문의 경우 출입검사는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 하나로 행하여지거나 정책의 수립을 위한 조사 등의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검사의

8) 행정조사의 분야별 법제유형.

상대방은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자유나 권리를 침해받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출입검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및 시간, 질문의 상대방, 검사대상인 서류 등은 가급적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고, 당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행정조사의 경우 “권력적 조사인지 비권력적 조사인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반국민으로부터 일정한 보고를 의무적으로 받거나 자료제출을 하게 하기 위하여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두는 경우에는 형사벌보다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보고기한을 확실히 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바⁹⁾, 이에 대하여서도 법이론적인 측면과 법제실무적인 측면에서 현행 법제실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2. 행정조사의 한계

(1) 실체법상 한계

모든 행정조사는 그 조사의 목적에 적합하게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 대마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대마감시원 기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마의 재배지, 창고, 연구실 기타의 장소에 임검하여 시험에 필요한 최소량에 한하여 대마를 수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⁰⁾ 또한 권력적 조사의 경우에는 근거된 법규의 범위내에서 임의적 방법에 의하여 조사목적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어려울 때에 보충적으로 행하여져야 할 것이다.¹¹⁾ 또한 비권력적 조사를 포함하여 모든 행정조사는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비례의 원칙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절차법상 한계

1) 영장주의와의 관계

헌법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의 영장주의가 행정조사를 위한 질문·검사·

9)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휘문인쇄출판사, 1996년, 88면 내지 92면.

10) 유사한 내용으로 식물방역법 제4조의 규정에서 식물검역관의 검사시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1) 박윤훈, 전거서, 581면.

가택출입 등의 경우에도 적용될 것인가는 문제이다. 논리적으로는 행정상 즉시강제의 경우처럼 영장필요설, 영장불요설, 절충설이 있겠는데 절충설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생각건대 행정조사가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하는 것인 한 그리고 행정조사의 결과가 형사책임의 추궁과 관련성을 갖는 한 사전영장주의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경우와 비권력적 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보겠다. 절충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한편 다만 일상적인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영장주의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지적이 있다. 타당한 지적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사인에 대한 침해가 경미한 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과 마찬가지로 입법적으로 영장주의를 배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¹²⁾

2) 증표의 제시와 법제적 검토

권력적 행정조사의 경우에 국민은 관계법령에 의거 작위의무·수인의무를 부담하고 또한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조사절차상 행정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이 조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비권력적 행정조사의 경우에 출입·검사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경우 특별한 입법적 기준이 없이 규정되어 있다. 행정조사를 규정하면서 증표의 제시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 고용보험법 제75조의7, 고용정책기본법 제30조, 공유수면관리법 제16조, 공인노무사법 제18조, 광산보안법 제20조, 교통세법 제23조, 국세기본법 제76조, 국세징수법 제25조, 남녀고용평등법 제20조, 대마관리법 제13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34조, 부당이득세법 제6조,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 상품권법 제29조, 선원법 제116조, 선원보험법 제11조, 소방대상법 제5조, 수산업법 제62조, 약사법 제64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1조의4, 원자력법 제103조, 원자력손해배상법 제16조, 의료보험법 제76조, 의료보호법 제23조, 인장업법 제7조, 인지세법 제11조, 자동차관리법 제72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0조, 자산재평가법 제31조,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55조, 전력기술관리법 제23조, 직업안정법 제41조, 직업훈련기본법

12) 홍정선, 전계서, 475면; 석종현, 전계서, 523면.

제45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제26조, 출입국관리법 제82조, 통계법 제12조, 특별소비세법 제28조, 항공법 제152조의3 및 제153조, 해난심판법 제37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4조 등이 있다.

반면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문화재보호법 제61조, 식물방역법 제4조, 인지세법 제11조, 주세법 제43조, 증권거래세법 제17조 등에서는 유사한 다른 법률과는 달리 법률에 증표제시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규정(증권거래세법시행령)하는 등 입법체계를 달리하고 있다. 이로 보아 개별법에서는 권력적 행정조사인지 비권력적 행정조사인지 여부에 대하여 크게 구별을 하지 아니하고 증표제시규정을 두고 있으며 행정조사에 관한 규정을 둔 법률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증표제시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입법체계상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개별법규가 증표의 제시를 규정하고 있는 한 증표의 제시는 행정조사의 요건을 이루는 것이고, 증표의 제시로 피조사자는 작위·수인의무를 지게 된다. 증표제시절차는 국민의 신뢰 및 국민의 임의적인 협력을 용이하게 확보한다는 점에서 비권력적 행정조사의 경우에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사전통지와 이유제시

행정조사는 그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의 일상생활과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사전에 당해 조사의 일시, 장소, 대상 등에 대하여 통지를 행할 필요가 있고, 상대방의 수인이나 협조에 의한 조사를 행하기 위하여 조사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게 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사전통지를 통하여서는 행정조사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될 상황에서는 예외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¹³⁾

그러나 현행법은 통상적으로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소방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서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24시간전에 이

13) 박운훈 교수는 행정조사는 다소간에 사인의 생활·활동의 평온을 저해하고, 일상성을 해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하여 사전통지가 필요하며, 행정조사를 받는 자가 그 이유를 몰라 행정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함으로써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도 이유개시가 필요하다고도 보고 있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는 것이 조사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나 긴급할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이 두가지 요청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는 범위안에서 사전절차를 조사의 효력요건으로 하도록 입법상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최신행정법강의(상)』, 제581면).

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며, 다만 관련 장소의 공개 또는 근무시간중에 검사할 때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좋은 입법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4) 시간의 고려

행정조사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영업시간대나 일상생활시간대에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예외적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필요성으로 인하여 영업시간외에 행하여지는 경우도 가능할 것이다. 이때에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행정현실상 위법한 영업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나 지도점검이 심야시간이나 취약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점에서 입법적 검토를 요한다 할 것이다.

이에 관한 입법례로는 소방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서 소방대상물의 검사는 근무시간이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을 요할 때 이외에는 관계인의 승낙없이 해뜨기 전 또는 해진 뒤에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5) 진술거부권의 문제

행정조사에 있어서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헌법 제12조에 따른 진술거부권을 갖지 않는다. 이는 형사절차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조사가 형사상 소추의 목적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서 인정된다고 본다. 각 법률에서 진술거부에 대하여 행정형벌이나 과태료 등에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볼 수 있다.

6) 조사의 수단과 현행법제의 문제점

행정조사를 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를 불응하는 경우에 행정기관이 실력을 행사하여 이를 저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관해 다수의 견해는 현행법이 행정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 징역, 벌금, 구류, 과료 등의 별도의 벌칙규정을 두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직접적인 실력행사자체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이러한 벌칙규정은 상대방의 저항이 위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인정되는 것이라는 해석하에 오히려 실력행사가 허용된다고 보는 견해도 주장되고 있다. 생각컨대 행정조사와 즉시강제를 구분하는 입장에서 서는 한, 행정조사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대해 직접적으로 실력을 행사하는 수단

이 인정될 수 없고, 단지 간접적으로 벌칙 등에 의해 강제요소가 인정될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부정하는 견해에 따른다.¹⁴⁾

현행법상 행정조사의 거부·방해 및 기피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고용보험법 제86조,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공인노무사법 제29조, 광산보안법 제2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선원보험법 제66조, 수산업법 제98조, 원자력손해배상법 제20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2조,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64조, 직업훈련기본법 제49조, 최저임금법 제29조 등이 있는데 각법의 규정목적이나 처벌필요성과 위반정도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다양한 모습으로 규정되어 있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징역이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경우 최고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새마을금고법 제66조)에서 6월이하의 징역이나 30만원이하의 벌금(신용협동조합법 제96조)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광산보안법 제26조)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형벌간 적절한 균형을 상실하고 있고, 벌금에 처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의 경우에도 행정형벌의 경우와 같은 문제를 보이고 있는데 최고 500만원(수산업법 제98조)에서부터 최저 50만원(원자력손해배상법 제20조)까지 규정되어 있다.

또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조사에 대하여 거부·방해 및 기피하는 자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거나(의료보험법 제33조의 규정에서 의료기관의 지정취소를 규정함), 특별한 처벌이나 불이익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법률로 가축전염병방역법, 공유수면관리법, 남녀고용평등법, 대마관리법 등이 있는데 특별히 처벌 등을 할 필요가 없는 법률외에 입법적 미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추가규정을 검토하여 입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VII. 행정조사의 하자문제

행정조사는 통상적으로 행정행위에 선행되는 경우에도 행정행위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별개의 제도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조사과정에서의 위법적인 사유는 다음 행위인 행정행위자체를 위법한 것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그러나 행정조사를 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를 토대로 행정행위가 행하여지는

14) 유지태, 전게서, 278면 내지 279면.

경우에는 잘못된 사실의 기초위에 행하는 것이 되므로 위법의 사유가 될 수 있게 된다.¹⁵⁾

VIII.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¹⁶⁾

1. 적법조사에 대한 구제

적법한 행정조사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을 당한 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이에 관한 일반법이 없다. 개별 법률로서는 골재채취법 제 47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기초조사 또는 실지조사를 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등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당해 행위자는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초지법 제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초지조성의 적지조사를 위하여 관련 토지에의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수용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起業者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조사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 정도이며, 이와 유사한 대부분의 법률에서 손실보상에 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생각된다.

2. 위법조사에 대한 구제

(1) 행정상 쟁송

조사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과 권리보호의 필요가 있는 자는 행정상 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권리보호의 필요는 통상 조사작용이 장기간에 걸치는 경우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취소·변경을 구한다는 것은 사실행위와 법적 행위의 합성적인 행위일 경우 조사행위의 취소·변경을 구함으로써 조사행위에 따르는 수인의무를 제거하고자 한다는 의미이다.

15) 유지태, 전계서, 270면.

16) 홍정선, 전계서, 477면.

(2) 행정상 손해배상

위법한 행정조사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법한 행정조사의 경우에 행정상 징송은 사실상 큰 의미를 갖지 못하나, 행정상 손해배상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 형사상 구제

무효인 행정조사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그러나 단순위법의 행정조사에 대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될 것인가는 문제이다. 일설은 공정력을 근거로 하여 정당방위의 성립을 부인한다. 생각컨대 이 문제는 공정력을 근거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소위 공정력은 효력의 문제이지 행위의 위법성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당방위의 성립여하는 형사법의 원리에 따라 정해질 문제이다. 즉 형법상 정당방위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의 성립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며 따라서 공무원집행방해죄 등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다.

(4) 기 타

이 밖에도 청원, 직권에 의한 취소·정지, 공무원의 형사책임·징계책임제도등은 간접적으로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제도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 <참고자료>

행정조사의 분야별 법제유형

<보건복지 분야>

법령명	규정내용			벌칙 등	기타(손실보상, 정보공개·보호등)
	출입·질문·검사·수거 등	증표 제시	사전통지·이유제시·시간		
가축전염병예방법	출입·질문·수거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보고·질문·검사	○		지정취소명령	
대마관리법	입검·검사·수거·질문	○			
사회복지사업법	보고·출입·질문·검사	○		벌금(300만원)	
식물방역법	출입·검사·질문·수거				
약사법	보고·출입·질문·검사·수거	○			
의료보험법	보고·질문·검사			지정취소명령	
의료보호법	보고·질문·검사				
국민연금법	제출요구·출입·조사·질문	○			
노인복지법	제출요구·출입·조사·질문	○			
아동복지법	출입·질문·조사	○			
의료법	출입조사	○			

<재정·경제 분야>

법령명	규정내용			벌칙등	기타(손실보상, 정보공개·보호등)
	출입·질문·검사·수거 등	증표 제시	사전통지·이유제시·시간		
교통세법	질문·검사	○			
국세기본법	보고·질문·검사	○			
국세징수법	질문·검사	○			
부당이득세법	질문·검사	○			
인지세법	질문·검사				
주세법	질문·검사				
증권거래세법	질문·검사				
지방세법	질문·검사·제출명령	○			
특별소비세법	질문·검사	○			
관세법	조사중출입금지				
새마을금고법				형벌(3년이하 징역, 200만원이하 벌금)	
신용협동조합법				형벌(6월이하 징역, 30만원이하 벌금)	
자산재평가법	질문·조사·보고	○			
통계법	검사·질문·자료제출요구	○			

<노동 분야>

법령명	규정내용			벌칙등	기타(손실보상, 정보공개·보호등)
	출입·질문·검사·수거 등	증표제시	사전통지·이유제시·시간		
고용보험법	질문·출입·검사	○		과태료(300만원등)	
고용정책기본법	보고·출입·검사	○		과태료(300만원)	
공인노무사법	보고·출입·질문·검사	○		과태료(100만원)	
남녀고용평등법	보고·출입·질문·검사	○			
산업안전보건법	보고·출입·질문·검사·점검·수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질문·검사	○		과태료(50만원)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법률	보고·출입·질문·검사	○		과태료(200만원등)	
직업안정법	보고·출입·질문·검사	○			
직업훈련기본법	보고·출입·질문·검사	○		과태료(100만원)	
최저임금법	출입·질문	○		벌금(100만원)	

<건설·교통 분야>

법령명	규정내용			벌칙등	기타(손실보상, 정보공개·보호등)
	출입·질문·검사·수거 등	증표제시	사전통지·이유제시·시간		
건설기계관리법	보고·출입·검사·질문	○		형벌(1년이하 징역, 100만원이하 벌금)	
부동산중개업법	보고·출입·검사·질문	○			
자동차관리법	보고·출입·검사·질문	○		과태료(100만원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보고·질문·검사	○		과태료(300만원)	
자동차운수사업법	보고·질문·검사	○			
항공법	보고·검사·질문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보고·검사·질문	○			
건설산업기본법	출입·열람·조사	○			
건축법	열람·조사	○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출입·조사	○			
골재채취법	출입·조사·측량	○	사전통지·관련자동의·시간제한		손실보상
공유수면관리법	출입·조사·측량·질문·검사	○		벌금·과료(5천원)	
공유수면매립법	출입·조사·측량	○	사전통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측량·조사·확인	○			

관광진흥법	출입·조사·측량·보고·검사	○		형벌(2년이하 징역, 700만원이하 벌금)	
국토종합건설계획법	보고·출입	○			손실보상
국토이용관리법	출입·조사·측량	○	사전통지·관련자동의·시간제한	과태료(200만원)	
도로법	출입·조사·측량	○	사전통지·의견청취·시간제한		
도시계획법	출입·조사·측량	○	사전통지·관련자동의·시간제한		
사방사업법	출입·조사·측량	○			
주택건설촉진법	출입·조사·측량	○	사전통지·관련자동의·시간제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출입·조사	○	사전통지·시간제한		
지하수법	출입·조사·측정	○	사전통지·관련자동의·시간제한		
택지개발촉진법	출입·조사·측량	○	사전통지·관련자동의·시간제한		
하천법	출입·조사·측량	○	사전통지·시간제한		
토지수용법	출입·조사·측량	○	출입공고·의견청취·사전통지		손실보상
하수도법	출입·조사·측량	○	사전통지·시간제한		
해외건설촉진법	보고·조사	○			

<통상산업 분야>

법령명	규정내용			벌칙등	기타손실보상, 정보공개·보호등
	출입·질문·검사·수거 등	증표 제시	사전통지·이유제시·시간		
광산보안법	질문·검사	○		벌금(50만원)	
상품권법	보고·질문	○			
전력기술관리법	출입·검사·질문	○			
도시가스사업법	출입·측량·검사	○			
유통산업발전법	보고·출입·조사	○			

<문화·체육 분야>

법령명	규정내용			벌칙등	기타손실보상, 정보공개·보호등
	출입·질문·검사·수거 등	증표 제시	사전통지·이유제시·시간		
문화재보호법	보고·출입·검사·질문				
청소년보호법	출입·조사·검사	○			

<해양수산 분야>

법령명	규정내용			벌칙등	기타손실보상, 정보공개·보호등
	출입·질문·검사·수거 등	증표 제시	사전통지·이유제시·시간		
선원법	출입·질문·검사	○		5만원이하의 벌금, 구류·과료 과태료(500만원)	
선원보험법	출입·질문·검사	○			
수산업법	출입·조사·측량·검사·질문	○			
해난심판법	질문·검사	○			
수산물검사법	출입·조사	○			

<내무 분야>

법령명	규정내용			벌칙등	기타(손실보상, 정보공개·보호등)
	출입·질문·검사·수거 등	증표제시	사전통지·이유제시·시간		
소방법	출입·질문·검사	○		벌금(200만원)	비밀누설 금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보고·출입·검사·질문	○			
인장업법	질문·검사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출입·질문·검사·보고	○			

<과학·기술 분야>

법령명	규정내용			벌칙등	기타(손실보상, 정보공개·보호등)
	출입·질문·검사·수거 등	증표제시	사전통지·이유제시·시간		
원자력법	보고·출입·검사·질문·수거	○			
원자력손해배상법	보고·출입·검사·질문	○		과태료(50만원)	

<법무 분야>

법령명	규정내용			벌칙등	기타(손실보상, 정보공개·보호등)
	출입·질문·검사·수거 등	증표제시	사전통지·이유제시·시간		
출입국관리법	검사·검색·질문·신문·조사				
보안관찰법	조사				

<국방 분야>

법령명	규정내용			벌칙등	기타(손실보상, 정보공개·보호등)
	출입·질문·검사·수거 등	증표제시	사전통지·이유제시·시간		
군용전기통신법	출입·조사·보고	○			

<환경 분야>

법령명	규정내용			벌칙등	기타(손실보상, 정보공개·보호등)
	출입·질문·검사·수거 등	증표제시	사전통지·이유제시·시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출입·조사·측량	○	사전통지·시간제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출입·조사	○		형벌(6월이하 징역, 200만원이하 벌금)	
자연환경보전법	출입·조사	○		형벌(1년이하 징역, 300만원이하 벌금)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출입·질문·조사·열람·복사	○		벌금(200만원)	

<정보통신 분야>

법령명	규정내용			벌칙등	기타(손실보상, 정보공개·보호등)
	출입·질문·검사·수거 등	증표제시	사전통지·이유제시·시간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출입·조사	○		과태료(100만원)	
전기통신사업법	출입·조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열람·출입·조사				

<농림 분야>

법령명	규정내용			벌칙등	기타(손실보상, 정보공개·보호등)
	출입·질문·검사·수거 등	증표제시	사전통지·이유제시·시간		
종자산업법	보고·조사·수거	○			손실보상
초지법	출입·조사	○			
축산물위생처리법	보고·검사·수거	○			